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박대출・이종배・강승규

권영세 • 신성범 • 박정하

고동진 · 김태호 · 이성권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·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 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.

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, 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, 사망조위금 등은 '사망 후 추서된 계급'이 아닌 '사 망 당시 계급'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,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.(안 제30조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,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	제3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
이 법에 따른 급여(제43조제1	
항·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·	
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	
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	
한다)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	
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	
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. <u><단</u>	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
	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
	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
	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
	19조,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
	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
	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
	기준으로 산정한다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